

■ 법률 칼럼

■ 장례 칼럼

##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 후



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6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중에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있다. 자주 들어본 FBI(연방수사국)는 일반 미국 국민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FTC는 모든 국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다. 대기업이 상권을 독점을 한다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기업 간에 자유경쟁을 하도록 규제를 하며 상인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도 한다.

장례에는 유가족과 장례에 필요한 관, 결관과 같은 물품과 예식 인도라는 서비스를 파는 업체와의 상거래가 존재한다.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슬픔과 눈물로 가득차고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이지만 장의사와 의논하고 합의하는 사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멘붕 상태에서 정신없이 계약을 하는 유가족들을 악덕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FTC는 장례업체들이 꼭 이행해야 할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상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가족이 인근 장의업체에 전화를 걸어 장례 가격을 묻는다. 업체에서는 위로의 말과 함께 사무실로 와서 의논하면 경비를 알려드리겠다고 한다. 가족이 업체 사무실에 갔다. 상담인과 의논을 하고 가격을 대강 어느 정도라고 구두로 받아 알고 나온다.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몇 가지 위반이 있다. 첫째 위반: 전화로 장례비를 물으면 장례비를 전화상으로 즉시 답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위반: 가족이 오피스에 가서 가격 상담을 시작하기 전 상담인은 그 회사의 가격표(General Price List: 흔히 GPL이라고 한다)를 가족에게 주고 그 가격표는 소비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간직하도록 주어야 한다. 의논할 때 보여주고 다시 회수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관에 대한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위반: 장례를 위임하면 계약상에서에 서명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사항들은 FTC가 장례업체에 엄중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다. FTC는 장례식장에 장례 가격표를 출입구 가까이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가격표를 요구하면 즉각 이유를 불문하고 주어야 한다. 왜 필요하냐? 어느 경쟁업체에서 있느냐? 등의 질문도 할 수 없다.

장례 가격표(GPL)에는 유가족들이 계약 서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신방부(Embalming)'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망자를 보는 순서가 있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Embalming is not required by the Law. But it is necessary for viewing). 장례보험을 사전에 구입하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보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어떤 장례를 준비하였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reneed contract should be disclosed to family). 유가족은 본인들이 꼭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만을 구입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각 항목마다 정확한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페키지(Package)로 구매할 수도 있다.' 등의 설명이 그것이다.

유가족은 모든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장례를 치려야 하는 유가족의 감정 상태가 이런 작은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